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의안 번호	1248
----------	------

제안년월일: 2023년 9월 4일

제안자: 환경수자원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 이영실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1022호)과 박수빈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1107호)을 일괄 심사한 결과,
-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내용을 수정·통합하여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사유

- 위원회 위원 선정 기준에 아동, 청년, 여성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을 반영할 수 있는 사람을 추가하고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재해 노출 실태와 피해 및 적응역량 등에 대한 실태조사 등의 시행 규정을 마련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골자

가. 사회계층의 대표성을 반영하여 위원을 위촉하는 규정 신설

(안 제10조제5항제4호).

나.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재해노출 실태조사 등의 시행(안 제22조의3).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아동,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중소기업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 중에서 해당 사회계층의 대표성을 반영할 수 있는 사람

제2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3(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기후위기에 따른 취약계층의 보호와 적응대책 마련을 위하여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재해 노출 실태, 피해 및 적응역량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피해 저감 및 적응역량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제2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할 때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 ④ (생략)</p> <p>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1. ~ 3. (생략)</p> <p><신설></p> <p>⑥ ~ ⑩ (생략)</p> <p><신설></p>	<p>제10조(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아동,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중소기업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 중에서 해당 사회계층의 대표성을 반영할 수 있는 사람</u></p> <p>⑥ ~ ⑩ (현행과 같음)</p> <p><u>제22조의3(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기후위기에 따른 취약계층의 보호와 적응대책 마련을 위하여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재해 노출 실태, 피해 및 적응역량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u></p> <p><u>② 시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피해 저감 및 적응역량 향상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u></p>